

의안번호	제120호
의결 연월일	201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5년 1월 19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0
----------	-----

제출연월일 : 2015. 1. 19.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조정 범위와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의 징수유예기간 등을 정비하고, 우리교육청 교육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을 완화하여 정비하며,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나.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 정비

-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도록 한 내용 삭제(안 제22조제7항)

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변경

-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준용’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안 제28조)

라.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액 조정 범위 확대

- 1)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
→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감액할 수 있도록 변경
(안 제36조)

마. 변상금 징수유예 조항 신설

- 1)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들에게 변상금 부과 시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함(안 제61조제3항)

바.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14. 12. 6. ~ 2014. 12. 26.):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를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호,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다.

제34조제1항 중 “제13조제8항”을 “제13조제9항”으로 한다.

제36조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변상금의 부과)”를 “(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무단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제1항 중 “영 제81호제1항”을 “영 제8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관서”란 본청의 소속교육기관(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직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u>지역교육청</u> 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2. ----- ----- ----- ----- ----- ----- ----- <u>교육지원청</u> ----- -----.
3. “ <u>지역교육청</u> ”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3. - <u>교육지원청</u> ----- ----- ----- -----.
4. “제2관서”란 <u>지역교육청</u> 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직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 <u>교육지원청</u> --- ----- ----- ----- ----- ----- ----- -----.

현행	개정안
5. (생략)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책임) ① (생략)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u>지역교육청</u>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③ ~ ④ (생략)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u>지역교육청</u>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나. <u>지역교육청</u>과 제2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다. <u>지역교육청</u>과 제2관서에	5. (현행과 같음)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교육지원청</u>-----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위임사무)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가. <u>교육지원청</u>----- ----- 나. <u>교육지원청</u>----- ----- ----- 다. <u>교육지원청</u>-----

현행	개정안
속하는 일반재산의 매각·교환·양여·대부·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현물출자 라. <u>지역교육청</u>의 행정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 허가 마. <u>지역교육청</u>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3. (생략) ② (생략)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시행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청과 <u>지역교육청</u>에 각각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원 중 3명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 ----- ----- ----- 라. <u>교육지원청</u>----- ----- 마. <u>교육지원청</u>----- -----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 ----- ----- ----- ----- ----- ----- <u>교육지원청</u>----- ----- ----- ② ----- ----- ----- -----

현행	개정안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생략) 2. <u>지역교육청</u>에 두는 심의회 위원장은 교육장(단,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단,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공유재산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민간인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본청은 재산업무담당사무관이, <u>지역교육청</u>은 재산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③ ~ ⑦ (생략)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생략)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현행과 같음) 2. <u>교육지원청</u>----- ----- ----- ----- ----- ----- ----- -----. 3. ----- -----, <u>교육지원청</u>----- -----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현행	개정안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u>제7조제2항</u>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 5. (생략)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① ~ ⑥ (생략) ⑦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u>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u> 2. ~ 3. (생략) ⑧ (생략) <u>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u>	1. ----- ----- ----<u>제7조제3항</u>----- ----- 2. ~ 5. (현행과 같음)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u>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를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u> 2. ~ 3.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u>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호,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u>

현행	개정안
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 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다.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과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 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나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제13조제9항-----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조정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6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 ----- ----- --- 100분의 5----- ----- -----.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 ② (생략)	제61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 ①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u>영 제81호제1항</u>에 따른 변상금을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② (생 략)	③ <u>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무단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u>영 제81조제1항</u>-----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2.30.] [법률 제12128호, 2013.12.30., 일부개정]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을 둔다.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13.12.27.][충청북도조례 제3624호, 2013.12.27., 일부개정]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시행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각각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
5.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시·군의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
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5.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

□ 외국인투자 촉진법[시행 2012.12.31.] [법률 제11535호, 2012.12.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13조(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7.8.][대통령령 제25441호, 2014.7.7., 일부개정]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3. (생략)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후 그 영구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공유재산을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23조(일반재산의 사권 설정)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 6. (생략)
7.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제30조(대부기간)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50년까지 대부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 24. (생략)

2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1조(변상금)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
한 경우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